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10. . (제 회)	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10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(4급 1명, 5급 1명)을 감축하면서, 미래자동차산업과의 분장사무를 산업정책실로 이관하는 한편,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 공포. 2023. 7. 10 시행)으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 수립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한시조직 신·구정원대비표,
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
항 없음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에 제69호의2부터 제6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9의2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

69의3.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

69의4.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

제13조제3항제29호 중 “광역경제권”을 “초광역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1호 중 “광역경제권”을 “초광역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1호 중 “광역협력권”을 “초광역권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0. 지방시대 종합계획(지역균형발전 분야) 수립 지원, 지방시대 연차

보고서(지역균형발전 분야) 작성 지원,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·협조

42의3.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

제51조의6을 삭제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지방시대 종합계획(지방자치분권 분야) 수립 지원, 지방시대 연차보고서(지방자치분권 분야) 작성 지원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·협조

[별표 6]

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49조제4항 관련)

1. 원전전략기획관(준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고위공무원단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산업정책실) ①·② (생략)	제12조(산업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69. (생략)	1. ~ 6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9의2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69의3.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69의4.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</u>
70. ~ 98. (생략)	70. ~ 98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산업기반실) ①·② (생략)	제13조(산업기반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28. (생략)	1. ~ 28. (현행과 같음)
29. <u>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,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정책의 수립·시행</u>	29. <u>초광역권</u> ----- ----- -----
30. <u>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</u>	30. <u>지방시대 종합계획(지역균형발전 분야로 한정한다) 수립 지원 및 지방시대 연차보</u>

31. 시·도 및 <u>광역경제권</u> 지역 경제·산업동향 분석·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32. ~ 40. (생략) 41. 시·도 간 <u>광역협력권</u> 사업 추진 42.·42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43. ~ 57. (생략) <u>제51조의6(미래자동차산업과) ①</u> <u>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</u> <u>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</u> <u>한 통칙」 제17조의3에 따라 20</u> <u>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</u> <u>한시조직으로 미래자동차산업</u> <u>과를 둔다.</u> <u>② 미래자동차산업과에 과장 1</u> <u>명을 두며, 과장은 4급으로 보</u> <u>한다.</u> <u>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</u> <u>다.</u> <u>1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</u> <u>련 부품 산업 육성</u>	<u>고서(지역균형발전 분야로 한</u> <u>정한다) 작성 지원</u> 31. ----- <u>초광역권</u> ----- ----- ----- 32. ~ 40. (현행과 같음) 41. ----- <u>초광역권</u> ----- ----- 42.·42의2. (현행과 같음) <u>42의3.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</u> <u>지원</u> 43. ~ 57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--	---

2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

3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·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
4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·분석

5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
6.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

7.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

8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

④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.

⑤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한시조직 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6]

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	(제49조제 4항 및 제 51조의6제 4항 관련)	(제49조 제4항 관 련)	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2. 미래자동차산업과(존속기한: 2023년 10월 31일)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△2
<u>총계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△2
<u>일반직 계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△2
<u>4급 이하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△2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9